

영등포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7.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2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및 마일리지제 운영의 보완 등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홈페이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 다. 마일리지제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신설(안 제15조의2)
- 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일치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9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8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본 조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안 제1조에 목적을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을 변경 함
- 안 제2조제2호 “인터넷시스템”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항목 삭제 함.

- 안 제5조제3항에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함
-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모사전송 서비스,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함.
- 그 밖에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하거나 구민이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전반적인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 보완,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인증관리센터와 제8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 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